

## 경운대학교 인터내셔널센터운영규정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인터내셔널센터(이하 “인터내셔널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기능)** 인터내셔널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 <개정 2020.12.01.>

1. 연구 및 교육에 관한 국제학술교류 업무
2. 학생 해외교류 및 유학에 관한 업무
3. 학생 해외취업 및 글로벌현장실습에 관한 교육 및 업무
4.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
5. 외국 학술 연구자 및 인사 초청
6. 해외 홍보 업무
7. 외국인 잉글리쉬 빌리지(English Village) 입소 학생의 선발 및 입학업무 전반
8. 한국어연수과정 입학 외국인 유학생의 선발 및 국내체류에 관한 제반 업무
9. 외국대학과의 자매결연
10. 재학생 및 지역민들의 외국어 교육 및 연수
11. 외국인 및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 및 교재개발
12. 공공기관 및 기업, 기타 단체의 외국어 위탁교육
13. 외국어능력시험 유치 및 평가
14. 국제인증 관련 업무
15. 기타 국제교류 관련 업무

### 제2장 조 직

**제3조 (구성)** 인터내셔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직원을 둘 수 있다.

<개정 2020.12.01.>

1. 센터장 1명
2. 부센터장 1명
3. 행정지원 직원 약간 명

[전문개정 2019.12.02.]

**제4조 (직무)** ① 센터장은 경운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인터내셔널센터를 대표하며, 인터내셔널센터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.

③ 직원은 센터장을 보좌하고, 인터내셔널센터 운영 및 행정에 관한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.

[전문개정 2019.12.02.]

**제5조 (운영위원회 설치)** 인터내셔널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[본조신설 2020.01.23.]

**제6조 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심의·자문한다.

<개정 2020.12.01.>

1. 사업의 성과분석
2. 연차별 사업계획
3. 운영규정의 개·폐 및 기타 중요사항

[본조신설 2020.01.23.]

**제7조 (위원회의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위원은 경운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인터내셔널센터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[본조신설 2020.01.23.]

**제8조 (위원회의 직무)**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,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[본조신설 2020.01.23.]

**제9조 (위원회의 회의)** ①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,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.

[본조신설 2020.01.23.]

**제10조 (심의 사항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0.12.01.>

1.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소속 외국인 교원의 임명 추천에 관한 사항
3. 소속 외국어 시간강사 선임에 관한 사항
4. 연구원 및 조교의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
5. 인터내셔널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인터내셔널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
- 7. 외국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협정에 관한 사항
- 8. 기타 인터내셔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[본조신설 2020.01.23.]

### 제3장 어학 교육과정

**제11조 (어학강좌 운영)** ① 센터장은 인터내셔널센터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비정규 어학강좌를 개설, 운영 할 수 있다.

② 개설강좌, 수강료, 강사로 등 어학강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.

③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어학강좌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.

④ 어학강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은 개강 이후 1주일 이내로 한다.

⑤ 유료강좌의 경우 참가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 납부한 수강료는 과오납 또는 폐강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센터장의 승인 하에 환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환불기한은 개강 후 1주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0.12.01.>

**제12조 (어학강좌개설 및 수강료 징수)** ① 어학강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터내셔널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 필요 시 기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기획, 운영할 수 있으며 강좌 운영에 필요한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.

**제13조 (어학강좌 지원자격)** 인터내셔널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. 다만, 한국어전일제과정 및 특수 어학과정에 대하여는 학력·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01.>

**제14조 (어학강좌 선발방법)** 수강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육과정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12.01.>

**제15조 (어학강좌 교육비)** ① 유료강좌의 경우, 수강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교육비의 반환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 중 수업료 등의 반환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용한다.

**제16조 (어학강좌 수료증 수여)** ①수료자격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체수업 시간의 80% 이상을 출석과 규정된 과정을 필한 자로 한다.

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.

**제17조 (어학강좌 재정)** ①인터내셔널센터의 모든 수입금은 교비회계 세입예산으로 한다.

② 인터내셔널센터의 운영재원은 전항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경운대학교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**제4장 삭제 <2019.12.02.>**

제18조 삭제 <2019.12.02.>

**제5장 보 칙**

제19조 삭제 <2019.12.02.>

제20조 (어학연수학생 관리지침) 어학연수학생의 수업 및 학적관리를 위해 어학연수생 관리지침을 둘 수 있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<2019.12.02.>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2020.01.23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 한다.

부 칙<2020.12.01.>

1. (시행일) 이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일로 한다.